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83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한지아 · 고동진 · 박성훈

김 건 · 안상훈 · 백종헌

임이자 · 김대식 · 최수진

김소희 · 서범수 · 정성국

박정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 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 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제14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검역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 관리청에 검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검역전문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 다)"을 "제12조제1항제2호의 검역조사 수행을 위하여 검역관리지역등" 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이하 "상황평가협의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 1.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상황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 립·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 립ㆍ시행 등) ① -------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위원 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 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 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신 설> 제5조(검역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질병관리청에 검역관리위원 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 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위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제14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 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 다.

② (생략)

<신 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해제) ① ----- 관리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 | 원회----- 제12 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 조제1항제2호의 검역조사 수행 을 위하여 검역관리지역등----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 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 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유입상황 평가협의회(이하 "상황평가협 의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 다.

1.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업

무협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황평가협의회의 구성・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u>통령령으로 정한다.</u>